#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597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4.

발 의 자: 강선우 · 김윤덕 · 추미애

서미화 · 김교흥 · 김한규

김 윤•박홍배•박해철

홍기원 · 조승래 · 박희승

정을호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9일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 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「국민연금법」 제64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 음(2015헌바82).

이후 국회는 2017년 12월 19일 「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을 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부칙을 통해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, 헌법재판소는 구 「국민연금법」 제64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부터 개정법률 시행 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자에 대하여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(2019헌가29).

이에 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이 적 용되도록 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(안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). 법률 제 호

#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"이 법 시행후"를 "2016년 12월 29일 이후"로 하고,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이 법 시행 전에 소송에 따라 분할연금 지급권 변경에 관한 처분이 확정되었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소송 제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	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
개정법률 부칙	개정법률 부칙
제2조(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	제2조(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
관한 적용례) 제64조제1항 및	관한 적용례)
제4항의 개정규정은 <u>이 법 시</u>	<u>2016년 12</u>
<u>행 후</u>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	월 29일 이후
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	
한다. <u>&lt;단서 신설&gt;</u>	<u>다만, 이 법 시행</u>
	전에 소송에 따라 분할연금 지
	급권 변경에 관한 처분이 확정
	되었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소
	송 제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
	<u>한다.</u>